

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

의안 번호	20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2. 10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법 제35조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코자 함

2. 주요골자

- 사하구 신평동 646번지 신평차량기지창내 유희지를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신청사건립부지로 활용코자 함

3. 취득대상 재산현황

소재지	지목	면적(m ²)	예정가격(천원)	소유자
신평동 646번지	잡종지	16,700	12,500,000	부산교통공사

4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5조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
-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
